

학술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 1994. 04. 25.
제8차 개정 2023. 11.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학술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학술연구 및 연구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02.)

1.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구비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4.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
5. 연구비 관리규정 제2조가 정하는 연구비
6.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7.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8. 학술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교내·외 교원연수, 연구년제 자격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99. 5. 20)
10. **학술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총장이 심의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이 된다. (개정 2005.8.30, 2007.10.29., 2019.06.25., 2022.04.20)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소집과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피사항)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의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의 심사, 심의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15, 2005.8.30)

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 2007.10.30)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293, 2023.11.02.)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